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844
------	-----

2023. 6. 28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김형재 의원(찬성자 49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6.2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형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·보수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함(안 제5조제1항제6호의2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(안 제5조)

- 개정안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7.·8. (생략) ② (생략)	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6의2.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</u> 7.·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- 동 조례안 정의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“태권도 시설”의 정의를 태권도 수련·경기·연구·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.

-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 시설은 역삼문화공원 내 위치한 국기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국기원은 1972년 준공 후 기부채납 되어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소유임.

〈국기원 현황〉

○ 개 원 : 1972. 11. 30.
○ 위 치 :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(역삼근린공원 내)
○ 규 모 : 부지면적 12,600㎡, 연면적 4,612㎡(지하 1층, 지상 3층) - 소유자 : 건물(서울시-공원조성과), 토지(강남구-공원녹지과) ※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국기원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('75년, 20년 무상사용)
○ 주요시설 : 본부건물(수련장, 관람석 850석, 사무실), 기념관, 주차장 40면 ※ 방 문 객 : 연 25만명(2022년 기준, 70%가 외국인)
○ 예 산 : 연 250억원(문체부 : 100억원, 자체 150억원 / 직원 : 51명)
○ 주요사업 : 승품·단 심사, 지도자 교육·연수, 시범단 육성 및 공연,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(56개국) 등
○ 운영방식 : 서울시 → 강남구(위임), 강남구 →국기원(민간위탁) - 기간 : 1994.2.12. ~ 현재(1년 단위 재위탁) - 대상 : 태권도장(지하층,지상3층) 4,220㎡, 식당 및 기념관(지상2층) 392㎡ - 연간 위탁료('23년 기준) : 524,552천원(토지 513,284, 건물 11,268)

- 그 간 국기원 시설 보수지원 요청에 대해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은 자치구(강남구)사무임을 이유로 지원에 등한시 해왔으며, 리모델링 사업은 체육 관련 사무와 밀접하므로 관련부서인 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옴.
- 또한 관광체육국은 국기원이 공원 내 시설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아 각종 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고 재산관리관이 푸른도시여가국이므로 시설 노후화 관련 보수 비용 지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음.

- 최근 제319회 제3차 본회의(2023.6.14.) 중 시장이 국기원을 도봉구 화학부대 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협조 요청을 언급하였음.
- 현재도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 시설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정부와 서울시의 태권도시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법적근거는 확보되어 있음.
- 다만 동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정부의 태권도진흥기본계획과 연계·협력하여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7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4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철성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새날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9명)

1. 제안이유

-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·보수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에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함.(안 제5조제1항제6호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의2.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 설개·보수 지원</u>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 번호

2023052300000004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김형재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05.23.

회신일 : 2023.05.2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태권도 진흥 사업)제1항제6호의2에서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태권도 진흥 사업)제1항제6호의2에서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